

(약 관)

연금 계약이전수수료 면제 특별약관

제 1 조(특별약관의 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연금저축 계약으로, 2001년 1월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가입한 계약을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전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회사의 다른 개인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을 이전받은 회사 계약으로, 2001년 1월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가입한 계약을 회사의 다른 개인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전하는 경우

② 적용되는 대상상품은 이 특별약관의 사업방법서 별지를 따릅니다.

제 2 조(계약이전수수료)

제 1 조(특별약관의 적용대상) 제 1 항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계약에서 약정한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제 3 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의 계약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